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85
----------	-------

발의연월일 : 2025. 12. 18.

발 의 자 : 한기호 · 강대식 · 임종득
김태호 · 윤한홍 · 정동만
정성국 · 김정재 · 유용원
안상훈 · 고동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였고, 2025년 1월 「군인보수법」이 개정되어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을 지급함.

그런데, 연금산정을 위한 복무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부사관이나 준사관이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경우에 복무기간을 상호 합산하는 것과 달리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합산 규정이 없고, 부사관 또는 준사관과 달리 장교가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한편, 2025년 1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추서 진급된 공무원 급여의 산정은 진급된 계급의 기준소득 월액을 기초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진급 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준사관 또는 장교가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 복무기간을 합산하고,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후보생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추서 진급된 사람의 퇴직수당 등 급여를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계급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유족을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를 “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로, “준사관에서 장교로”를 “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산정”을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급여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생략)	제5조(복무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u>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 준사관 또는 장교로 임용된 사람 및 준사관에서 장교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상호 합산하되, 준사관 또는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경우에는 군간부후보생 기간을 포함한다.</u>	② <u>장교에서 부사관 또는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에서-----준사관에서 부사관 또는 장교로-----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u> -----.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9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u>산정 <단서 신설></u>	2. ----- ----- ----- <u>산정한다.</u> <u>다만, 전사 또는 순직하여</u>

	<u>「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 소득월액은 진급된 계급을 기 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u>
--	---